

영등포구의회  
제155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(안)』

# 檢 討 報 告 書

2010. 9. 7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 專 門 委 員 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(안)』

#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(안)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 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10. 8. 19.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■ 제정(제안) 이유

- 성폭력·가정폭력·유괴 등 아동·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·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·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지역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.

## ■ 주요골자

-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 명시(안 제1조·제2조·제3조)

- 아동·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, 범죄피해센터,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(안 제4조)
-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·운영(안 제5조부터 안 10조까지)
-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보호,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·시행(안 제11조)

## ■ 관련법규

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여성부 2010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  
(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 지정 운영)

## 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양천구, 강서구, 용산구, 동대문구, 은평구, 도봉구, 강동구 등

## 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, 운영하고 아동·여성보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, 시행하여 아동·여성폭력 피해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 및 사전예방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● 주요내용을 보면,

- 안 제3조와 제4조에 아동·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·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구성·운영토록 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이 관련계획을 매년 수립, 시행하여 아동·여성 폭력예방과 홍보, 협력체계의 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비와 출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●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아동과 여성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들어가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,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10. 9. 7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【참고자료 : 관련 법령】

## 관 련 법 령

### 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5.8>

1.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
2.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,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
4.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
5.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(經費)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10.17]

### 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1997.8.22>

### 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,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(이하 "성매매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매매,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
2.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(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)의 설치·운영

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12.19]